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1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 박찬대·신동근·김홍걸

이동주・맹성규・강선우

김교흥 • 정일영 • 허종식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

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 할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	
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	
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	
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u><단서 신</u>	<u>다만, 그 위</u>
<u>설></u>	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
	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
	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
	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u>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	
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	

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